

고성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612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2. 3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2. 3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0. 2. 10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'99. 8. 9 폐기물관리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내용을 재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폐기물관리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해당조문을 정비함.
(안 제2조, 안 제4조)
나. 전 국토의 폐기물 투기금지 지역화 및 청결유지 명령제를 도입함.
(안 제5조제3항)
다.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.(안 제8조 및 제10조)
라. 쓰레기봉투 제작업체와 판매자의 보고 및 관계대장 확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.(안 제23조)
마. 매립장 반입대상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반입 제한량을 당초 1톤미만에서 5톤미만으로 상향 조정함.(안 제24조제2항제2호)
바.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제 실시(안 제25조의 2)
사.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면 개정함.(안 별표 5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는 1996. 9. 20 조례 제1495호로 제정 공포하여 그간 3차에 걸쳐 개정을 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금회 제안이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'99. 8. 9 폐기물관리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을 정비코져 함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개정조항 제5조제3항 폐기물의 조치에 토지건물의 소유자, 점유자,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토록 되어 있는바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조항이 있는지
- 답 : 개정조항의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불이행자에게는 1차 30만원, 2차 70만원, 3차 1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0. 2. 10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